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효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7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이효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길영,
김원태, 김태수, 남창진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황유정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,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(이용료) 감면 근거 마련
 - 시설 입장료(이용료)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,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다. 기타 : 법제과 의뢰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 받았으나, 기획경제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 받음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이용료) ① ~ ③ (생 략)	제8조(이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 른 임산부 본인
11. (생 략)	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8조제4항제11호	△	〔추계 곤란〕 임산부 이용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, 관련 통계 부재 및 구체적인 이용 수요 예측 불가로 객관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□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 주요 공공시설(도시건축전시관) 이용 시 임산부 본인에게 이용료 또는 입장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임산부 예우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.
- 조례 개정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소관 부서(건축기획과) 확인 결과 기존 시설 이용 현황 중 '임산부'를 별도로 분류한 기초 통계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, 제도 시행 이후 신규 임산부 입장객의 유입 규모 및 실제 이용 빈도 등 향후 구체적인 수요 변화를 사전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비용 추계가 곤란함.

4. 작성자

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

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

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

주 무 관 이 설 화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